

제1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015호**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  
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  
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정부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군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나. 비용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 3. 작성자

작성자	<예시 1> ○○시 ○○○국 ○○○○과장 ○○○ <예시 2>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락처	(000) 000 -000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 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별지 제2호서식]

##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요인

### 2. 미첨부 근거 규정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 4. 작성자

작성자	<예시 1> ○○시 ○○○국 ○○○○과장 ○○○ <예시 2>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락처	(000) 000 -0000

제1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016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후  
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군산시 본청·보좌기관·직속기관·사업소·하부 행정  
기관 및 군산시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  
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산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에게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노조전임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 기간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2년이상 파견중인 공무원
4. 시장이 군산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

③ 시장은 군산시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편의 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우수·퇴직 공무원에 대한 표창·포상·국내외 시찰

2.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결혼·생일·자녀 입학·명절(설·추석) 선물 제공
4. 공무수행 중 사망·상해 공무원에 대한 장의·보상 사업
5. 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
6.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 지원금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7.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 후생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이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명
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군산시청매점운영규정」은 폐지한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2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501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

제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자율항목)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호의 합으로 한다.

- 1. 기본복지점수 :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된 점수
- 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배정된 점수
-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배정된 점수.

②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제1항 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5조(복지점수 관리) ①복지점수는 해당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남은 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중 외부 위촉위원은 30%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기관 홈페이지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2-16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2. 01.

##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한국지엠대우 사원임대아파트
2. 사업주체 : 한국지엠(주), 대창기업(주)
3.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전북 군산시 경암동 490-2

나. 대지면적 : 6,911m<sup>2</sup>

다. 건축면적 : 933.0698m<sup>2</sup>

라. 연 면 적 : 8,864.8814m<sup>2</sup>

마. 건축규모 : 사원임대 2동 15층, 120세대, 경비실·경로당 등  
 - A형 72.6678(전용면적 : 50.587m<sup>2</sup>) 60세대  
 - B형 72.6678(전용면적 : 50.587m<sup>2</sup>) 60세대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업비 : 8,789,520천원

아. 사업기간 : 2011. 06 ~ 2012. 12

4. 변경내용

구 분	변경내용	비 고
부대시설	103동과 104동 통합 (관리동, 전기실, 기계실)	
공동주택	지붕구조 변경(평슬라브→경사슬라브) 전면 입면창호 변경(루버창호 추가) 102동 건물배치 조정(북쪽 0.6m, 동쪽 0.3m)	

5.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0-4228)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2-18호

###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 조성계획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2월 일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학교	군산 대학교	군산시 미룡동 729-2 일원	822,092	-	822,092	전북고56 (91.2.9)	

2. 도시계획시설(학교 : 군산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22,092	-	822,092	100.0	
교육시설	335,446	증) 11,790	347,236	42.2	산학연합동관 증) 6,180m <sup>2</sup> 다목적체육관 증) 5,610m <sup>2</sup>
체육시설	56,520	-	56,520	6.9	
도로	42,496	-	42,496	5.2	
녹지	387,630	감) 11,790	375,840	45.7	

2) 건축물계획

시 설 명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67,647	232,398	증) 12,704	증) 16,872	80,351	249,270	
교육 시설	소 계	34,807	128,515	증) 3,165	증) 6,660	37,972	135,175	
	인문관	3,422	12,661	증) 220	증) 1	3,642	12,662	
	사회과학관	2,202	8,576	-	-	2,202	8,576	
	이학관	3,429	14,712	-	증) 2	3,429	14,714	3동
	예술대	1,672	6,196	증) 907	증) 1,153	2,579	7,349	5동
	공대4호관	964	4,004	증) 692	-	1,656	4,004	
	공학관	4,177	19,411	-	증) 1	4,177	19,412	3동
	예술대2호관	1,409	2,507	-	증) 1	1,409	2,508	
	자연대4호관	1,052	1,812	증) 1	증) 1	1,053	1,813	
	해양과학관	4,162	21,568	-	증) 1	4,162	21,569	2동
	공동실험 실습관	3,831	9,085	증) 1	증) 25	3,832	9,110	
	학생회관	3,622	11,416	증) 1	-	3,623	11,416	2동
	황룡도서관	1,894	5,169	증) 1	증) 1	1,895	5,170	
	대학본부	1,023	3,692	-	증) 1	1,023	3,693	
	중앙도서관	1,948	7,706	-	-	1,948	7,706	
산학연협동관	-	-	증) 1,342	증) 5,473	1,342	5,473		
지원 시설	소 계	14,158	61,556	증) 8,840	증) 10,058	22,998	71,614	
	동력실	786	896	증) 4	증) 1	790	897	
	체육관	2,014	2,658	증) 1	-	2,015	2,658	
	정문안내실	63	63	증) 8	-	71	63	
	종합교육관	1,786	5,667	-	증) 1	1,786	5,668	
	기숙사	2,986	35,381	증) 3,771	-	6,757	35,381	6동
	게스트하우스	3,000	11,000	-	-	3,000	11,000	
	생활관관리동	1,498	2,866	증) 1	증) 1	1,499	2,867	
	창업보육센터	1,025	1,025	증) 55	증) 55	1,080	1,080	
	매점	1,000	2,000	-	-	1,000	2,000	
	다목적체육관	-	-	증) 5,000	증) 10,000	5,000	10,000	

시설명		건축면적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연구 시설	소 계	4,910	15,583	증) 330	증) 2	5,240	15,585	
	황룡문화관	1,660	4,995	증) 330	-	1,990	4,995	
	해양생물연구 센터	650	2,525	-	증) 1	650	2,526	
	디지털기술정 보센터	2,600	8,063	-	증) 1	2,600	8,064	
부속 시설	소 계	13,772	26,744	증) 369	증) 152	14,141	26,896	
	공대부속공장	1,670	5,620	증) 433	증) 16	2,103	5,636	4동
	외국인생활관	167	804	증) 1	-	168	804	
	후생종합복지관	2,000	8,500	-	-	2,000	8,500	
	기관공장	1,164	1,490	-	증) 1	1,164	1,491	
	식품기공실습관	976	976	증) 1	증) 1	977	977	
	양어장	1,501	1,868	-	증) 104	1,501	1,972	
	수산공학실습관	310	310	-	-	310	310	
	자동차부품혁 신센터 (부품센터공장 수변전실)	800	800	증) 367	증) 554	1,167	1,354	
	학군단 (학군단창고)	558	1,600	증) 16	-	574	1,600	
	버스차고	1,500	1,500	-	-	1,500	1,500	
	해상안전교육장	330	330	-	-	330	330	
	목공창고	275	275	증) 1	증) 1	276	276	
	창고2	1,000	1,000	감) 1,000	감) 1,000	0	0	
	차고(주차장부 속건물)	60	60	-	-	60	60	
	골프학습장	838	988	증) 95	-	933	988	
	본부식	223	223	-	-	223	223	
	인조잔디구장 관리소	60	60	-	-	60	60	
	학생테니스장 관리소	140	140	-	-	140	140	
	오수처리장	-	-	-	-	-	-	
온실	200	200	-	-	200	200		
구조재료실습관	-	-	증) 260	증) 280	260	280		
황룡마루	-	-	증) 195	증) 195	195	195		

3.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2-19호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및 대표지번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 및 변경 된 대표지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2. 15. ~ 2. 29.

군 산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34외 35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117-1외 3건

지번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군산시 쌍천로 57외 14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대표지번 변경 : 군산시 중앙로 142외 2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0-6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